

세리사법인

1. 세리사법인제도의 개요

근래 기업을 에워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에서 세리사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2년 세리사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 ①경제가 복잡화, 다양화, 고도화하는 가운데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리사 업무를 공동으로 하여 보다 높은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점
- ②자격자에 의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제공이 되는 점
- ③책임능력의 충실(무한연대책임)을 꾀하는 점
- ④규제완화추진이라는 관점에서 납세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게 된 점

(1)사명

세리사법 제 1 조에서는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뢰로서 조세관련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꾀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세리사의 사명을 정하고 있다.

세리사법인은 이 「세리사의 사명」이 준용 된다.(법제 48 조의 16)

(2)특별법인

세리사법인은 세리법에 의거 사원을 세리사로 한정하고 특별법인으로 취급되며 회사법 상 합명회사에 준한다.

「회사법 상 합명회사」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사원 전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연대하여 무제한 책임을 진다.
- ②사원의 신뢰가 회사의 실질적인 기초가 되며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회사이다.
- ③사원전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④출자방법은 금전 및 현물출자 이외 신용·노무 등의 무형재산도 가능하다
- ⑤사원이 지위(지분)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전원의 승락이 필요하다
- ⑥주식회사와는 달리 조합성이 높으며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조직이다.

(3)인적구성

세리사법인의 인적구성으로서 다음의 요건이 부여되고 있다.

- ①사원은 세리사에 한정 된다.

②사원의 수는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사원 중에 세리사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업무내용

세리사법인이란 세리사 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함을 목적으로 세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법 제 48 조의 2)임으로 그 업무는 세리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세리사업무가 된다. 또한 세리사 업무 이외에도 그 업무에 부수된 회계 업무(법 제 2 조 제 2 항)와 부수되지 아니하고 행하는 회계업무(규정 21 조), 보좌인 업무(법 제 2 조의 2)도 가능하다.(법 제 48 조의 5, 제 48 조의 6)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와 같은 업무범위를 목적으로 하는 타 법인의 임원이 되거나 타 세리사 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없다.(법 제 48 조의 14)

2. 세리사 법인의 설립

(1)정관의 성격

세리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 사원이 되고자하는 세리사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8 제 1 항)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인정 된다.(법 제 48 조의 8 제 2 항, 회사법 제 30 조 제 1 항) 또한 세리사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된다.(법 제 48 조의 9) 즉 세리사 법인은 법정요건을 만족하면 주무관청의 인허가가 필요 없으며 설립등기로서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는 준칙주의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2)정관작성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되며 정관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사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①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지 않으면 정관은 무효가 되며 세리사법인 자체의 설립무효가 되는 사항이다

②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재하지 않으면 법률상 효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이다. 예로서 대표사원, 탈퇴사유, 존속기간, 해산사유, 해산 시 재산처분방법,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③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기재 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 임의적으로 기재된 사항이다. 예를 들면 사원의 보수결정방법, 회계연도, 이익처분 에 관한 사항 등이다.

(3)절대적 기재사항(법 제 48 조의 8 제 3 항)의 유의점

목적(1 호)

세리사 법인의 목적은 세리사법 제 48 조의 5, 제 48 조의 6 에서 정해진 업무범위 내에서 정관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세리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리사 업무가 필수적이며 동조 제 2 항의 세리사 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회계업무 및 세리사법 제 2 조의 2 에 규정한 보좌인 업무에 한정 되고 있다.

따라서 세리사 법인의 정관의 「목적」에는 회사법상 주식회사 등의 정관에 통상 규정된 「기타 전 각호에 부대하는 업무일체」 등의 기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명칭(2 호)

(가)세리사 법인은 세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명칭 중에 「세리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3)

(나)회사법 개정에 따라 유사상호 금지규정은 없으나 개정 전부터 세리사 법인의 명칭에는 상업등기법의 유사상호 등기금지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읍면 내에서 유사명칭의 사용에 따른 오인 및 혼동으로 납세자에게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이름 또는 이름 이외의 문자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세리사 법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공양식에 반하는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명칭은 한자, 히라가나 또는 가타가나로 표기하나 외국문자는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마)명칭 중에 部나 庁 등의 국가, 특별시, 직할시, 시읍면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적기관으로 오인·혼동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부동산감정사 등 타 법률에 따라 인정된 자격이 있는 세리사인 사원이라도 이들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종된 사무소의 명칭은, 주된 사무소의 명칭과 함께 종된 사무소임을 나타내는 문자(지소, 지점 등)을 사용한다.

(아)자기디스크로 세리사법인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세리사법인

」의 5 문자를 포함하여 30 자 이내로 되어 있다. 30 자를 초과하는 때에는 제출시에 30 자 이내의 약식명칭으로 수리되며 명부의 비고란에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자)세리사법인 명부관리상 「세리사법인 」 또는 「 세리사법인」이 바람직하며 「 세리사법인 」은 종된 사무소 명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 피해야만 한다.

③사무소 소재지(3 호)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주된 사무소와 종된 사무소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란 세리사법인의 활동중심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게다가 어느 사무소에도 그 사무소 소재지의 소속 세리사회의 회원인 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법 제 48 조의 12)

또한 사무소를 이전·폐지한 때에는 정관변경도 함께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13 제 2 항)

④사원의 성명 및 주소(4 호)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이어야 한다.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책임을 가지므로 그 세리사인 사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다.

⑤사원의 출자관련사항(5 호)

세리사법인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 당연히 필요하므로 사원은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출자는 재산출자(금전, 현물)이외에 신용, 노무출자가 인정되고 있다

정관은 금전, 현물, 신용, 노무의 종류 이외에 그 객체(금전출자액,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면적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 노무출자의 경우에는 노무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출자의 경우에는 「신용」만을 기재하면 족하다. 노무·신용의 출자금액에 대하여 정관에 기재만 될 뿐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⑥업무집행에 관한 사항(6 호)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 48 조의 11) 그래서 총 사원의 동의로 대표사원을 정한 때에도 대표 권한으로 타 사원의 업무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대표자의 결정유무나 각 사원이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여 집행하는가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사원의 과반수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업무집행이란 세리사법인의 본래의 업무인 세리사 업무와 세리사법인의 경영에 관한 계약체결 등의 법률행위 및 장부작성(법 제 41 조), 사용인의 관리·감독(법 제 41 조의 2) 등의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4) 설립등기

세리사법인은 시행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7 제 1 항).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서 세리사법인이 성립된다(법 제 48 조의 9). 즉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는 것이다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조합 등 등기시행령 제 2 조, 은 정관의 상대 기재사항)

- ① 목적 및 업무
- ② 명칭
- ③ 사원(세리사 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 ④ 사무소 소재지(종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 ⑤ 대표권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자격
- ⑥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

(5) 설립계 제출

세리사법인은 성립한 때에 성립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등기사항 증명서 및 정관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역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 연합회에 설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10 제 1 항)

3. 세리사법인의 사원

(1) 사원의 자격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이어야 한다(법 제 48 조의 4 제 1 항). 이는 세리사법인이 세무사라는 신분을 가진 자만이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세리사법의 특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음의 자는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법 제 48 조의 4 제 2 항).

① 징계처분(법 제 43 조, 제 45 조, 제 46 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세리사로서 당해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법행위 등의 처분(법 제 48 조의 20 제 1 항)에 따라 세리사법인이 해산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때에 그 처분일 이전 30 일 이내에 그 사원이었던 자가 그 처분일로부터 3 년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사원의 가입·탈퇴

세리사 법인에 새로운 사원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원전원의 동의를 필요하다. 신규로 가입한 사원의 성명 등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한편 사원의 탈퇴에는 법정탈퇴와 임의탈퇴가 있다.

①법정탈퇴

법인의 사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탈퇴한다.(법 제 48조의 17)

(가)업무폐지와 사망,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라 세리사의 등록이 말소된 때
(법 제 48조의 17)

(나)정관에 정해진 탈퇴사유가 발생한 때(정년에 도달한 때 등)

(다)사원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

(라)제명(법 제 48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859 조)

게다가 제명은 사원의 의사에 반하여 사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므로 사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 당해 사원 이외의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서 당해 사원의 제명을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이외의 사유로는 제명할 수 없다.

(a)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b)경업금지규정을 위반한 때(법 제 48조의 14 제 1 항)

(c)업무집행 시 부정한 행위를 한 때

(d)세리사 법인을 대표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권리 없이 세리사 법인을 대표한 때

(e)기타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②임의탈퇴

사원은 정관에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어느 사원을 종신 존속하기로 정한 때에는 6 개월 전에 예고함으로써 탈퇴이유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사업연도 종료 시에 탈퇴가 가능하다.(법 제 48조의 21, 회사법 606 조 제 1 항, 동조 제 2 항 규정의거 정관에 기재가 가능)

또한 존속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법 제 48 조의 21, 회사법 제 606 조 제 3 항). 부득이한 사유란 사원간에 신뢰관계가 없어져 불화가 발생한 때나 업무부진 등 탈퇴하려는 사원의 일신상 사유를 말한다.

(3)사원의 지위양도

세리사 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하다. 이 경우 타 사원전원의 동의를 필요하나 정관에 별도로 정하여져 있어도 관계없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85조 제 1 항 및 제 4 항). 단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세리사만 해당되므로 세리사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4) 사원의 책임

① 사원의 책임내용

세리사 법인의 각 사원은 세리사 법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또는 세리사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도 부족할 때에는 각각 연대하여 세리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80 조 제 1 항).

그러나 그 책임은 법인의 재산으로 우선 충당하므로 2 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세리사 법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고 강제집행 시에 채무변제도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원은 면책된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80 조 제 1 항 2 호).

② 가입사원, 탈퇴사원 등의 책임

세리사 법인 성립 후에 새로이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발생한 세리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605 조).

탈퇴사원은 법인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탈퇴등기 후 2 년간 탈퇴등기 전에 발생한 세리사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612 조).

게다가 세리사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수속 중인 때에도 청산진행과는 관계없이 사원은 해산등기 후 5 년간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법 제 48 조의 21 제 2 항, 회사법 제 673 조 제 1 항).

(5) 사원 등의 금지행위

① 경업금지 · 타 세리사법인에 가입금지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본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하거나 혹은 타 세리사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법 제 48 조의 14 제 1 항).

세리사 법인의 사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 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한 때에는 당해 업무에 따라 당해 사원 또는 제 3 자가 얻은 이익은 세리사 법인에게 생긴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법 제 48 조의 14 제 2 항). 그래서 당해 사원은 이 추정액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한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 당해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 타 사원의 결의로 제명에 부치거나 또는 세리사 법인의 사원의 업무집행권 혹은 대표권 소멸의 소를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859 조부터 제 862 조).

② 이익상반 거래의 제한

사원은 타 사원의 과반수 결의가 없는 한 본인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세리사 법인과 거래할 수가 없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5 조 제 1 항 1 호). 또한 사원이 세리사 법인을 대표하여 사원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거나 하는 행위 기타 세리사 법인과 사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래를 하는 때에도 타 사원의 과반수 결의 없이 할 수 없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5 조 제 1 항 2 호).

그러나 보조세리사는 세리사 법인의 사용자임으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보조세리사의 취급

보조세리사는 세리사 법인이 행하는 세리사 업무에 관하여 보조자로서 자기명의로 세무대리 등의 세리사 업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사용인인 세리사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때에는 세리사 법인의 명칭을 기재함과 동시에 보조자로서 세리사 개인이 서명·날인 한다(법 33 조, 규정 제 16 조, 기본통칙 33-1).

4. 세리사 법인의 업무

(1)세리사 법인의 업무범위

세리사 법인의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으나(법 제 48 조의 5 및 6), 의 세리사 업무는 그 설립 목적상 당연히 행하는 업무다. 또한 ~ 는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 ①세리사법 제 2 조 제 1 항에 규정한 세리사업무(세무대리, 세무서류작성, 세무상담)
- ②세리사법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한 세리사 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무서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타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③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1 조에 규정한 세리사 업무에 부수되지 않고 행하는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타 법률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 ④세리사법 제 2 조의 2 제 1 항에 규정한 보좌인 업무의 수탁업무

또한 개인인 세리사가 행하는 부동산 관리업, 손해보험 등의 대리점, 회계사무 관련용품·컴퓨터 등의 물품판매업 등의 주변업무는 세리사 법인은 할 수가 없다.

(2)업무집행권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모든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 48 조의 11)

그리고 총사원의 동의로서 대표사원을 정한 경우에도 대표권한으로 타 사원의 업무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세리사 법인의 사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며 또한 법령 및 정관을 중시하고 세리사 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3 조 제 1 항 및 2 항).

또한 사원은 세리사 법인 또는 타 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언제든지 그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며 그 업무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3 조 제 3 항).

사원이 이러한 법령·정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세리사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6 조)

(3) 대표사원

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지만 사원전원의 동의(정관 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다른 사원의 상호선택)로 대표사원을 정할 수 있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9 조 1.3 항)

대표권은 세리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제한하여도 선의의 제 3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599 조 4 항 및 5 항). 게다가 세리사 법인을 대표할 때 부정행위 등이 있거나 대표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때에는 당해 대표사원 이외의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제소로서 대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860 조-862 조).

(4) 업무집행방법

세리사 법인이 행하는 업무 중 세리사 업무는 그 법인의 사원인 세리사나 보조세리사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세리사 법인은 세리사가 아닌 자에게 세리사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법 제 48 조의 15).

① 재무관련 업무취급

재무관련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재무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세리사 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업무」에는 컨설팅 업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리사가 업무를 대신하는 업무(사회보험노무사 업무 등)를 말하며 「세리사 업무에 부수되지 아니하는 업무」에는 현물출자재산 등의 가액증명업무나 회계참여업무 등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업무 중에서 회계참여업무는 세리사 법인이 수탁하여 사원

중에 직무집행자를 선임 한다

보좌인 업무 취급

「조세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좌인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는 세리사법인이 수탁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세리사 법인의 사원인 세리사 또는 사용인인 세리사 중에서 그 보좌인을 선임한다(법 제 48 조의 6).

(5)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

사원의 상주의무

세리사 법인의 사무소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인 세리사를 상주시켜야 한다(법 제 48 조의 12). 상주대상은 주된 사무소 이외에 종된 사무소를 포함한다(기본통칙 48 의 21-1). 사원인 세리사를 상주시켜야 하므로 보조세리사는 상주의무가 없다.

「상주」란 사무소에서 계속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주하는 사원세리사는 1 사무소당 1 명으로 족하다.

종된 사무소 설치

세리사 법인은 복수의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의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세리사 법인은 소속세리사회의 구역 외에 종된 사무소를 설치하고 종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때에는 종된 사무소 소재지 구역의 세리사회 회원으로 된다(법 제 49 조의 6 제 3 항).

③ 사무소이전 또는 폐지

세리사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함에 따라 소속세리사회의 구역에 사무소가 없어진 때에 구 소재지에서 이전 또는 폐지등기를 한 때에는 당해 세리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된다.

또한 소속된 세리사회를 퇴회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퇴회서를 소속 세리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회계장부

세리사 법인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614 조부터 제 619 조). 따라서 회계장부는 법인이 성립한 때와 매 회계연도 업무상의 재산과 그 가액, 업무상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적시에 정확하게 기재하며, 대차대조표는 성립 시 및 매 회계연도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 한다.

이 회계장부나 대차대조표 기타 계산서류는 10 년간 보존의무가 있다.

(법 제 48 조의 21 제 1 항, 회사법 제 615 조 제 2 항, 제 617 조 제 4 항)

(7) 세리사법인의 권리의무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은 세리사법인에 대하여도 준용 된다.

(법 제 48 조의 16)

준용되는 사항은 세리사의사명 세무대리 권한명시 특례위임을 요하는 사항 조사통지 의견청취 ⑥탈세상담 등의 금지 ⑦신용실추 행위금지 ⑧회칙준수의무 ⑨장부작성의무 ⑩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 등의 의무 ⑪조언 의무가 있다.

또한 세리사법인의 성립, 정관변경,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 합병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본점소재지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해야 한다(법 제 48 조의 10 제 1 항, 제 48 조의 13 제 2 항, 제 48 조의 18 제 3 항, 제 48 조의 19 제 3 항).

5. 세리사법인의 해산

세리사법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이루어 지는 경우 청산종료로서 법인격이 소멸된다.

(1) 해산사유

세리사법인의 해산사유는 다음과 같다(법 제 48 조의 18 제 1 항).

①정관에 정해진 이유(1 호)

존속기간만료, 특정사원의 사망 등이다.

②사원전원의 동의(2 호)

세리사법인은 사원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해산이 가능하나 그 요건은 사원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다른 세리사법인과의 합병(3 호)

세리사법인의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법인이 존속하며 피 흡수법인은 당연히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즉시 소멸된다. 이에 대하여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며 합병 당사자인 법인은 당연히 해산되고 청산절차 없이 소멸된다.

④파산수속 개시결정(4 호)

세리사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연히 해산된다. 그리고 파산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파산종결로서 소멸된다. 게다가 세리사법인은 사원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므로 법인의 파산절차 개시원인은 사원이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로 한정된다(법 제 48 조의 21 제 6 항, 파산법 제 16 조 제 2 항).

⑤재판에 의한 해산명령(5호)

이에는 해산명령(법 제 48 조의 21 제 3 항)과 해산소송(법 제 48 조의 21 제 5 항)의 두 종류가 있다. 해산명령은 세리사법인이 사회적 임무에 부응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하게 된 때에 비송사건 절차에 따라 법인격을 박탈하는 것이다(회사법 제 824 조, 제 826 조, 제 866 조 제 1 항, 제 870 조 제 1 항 3 호 ㉔). 해산소송에는 세리사법인이 자치적 능력을 상실한 때에 사원의 제소로서 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판결한다(회사법 제 833 조 제 2 항, 제 834 조 21 호, 제 835 조 제 1 항, 제 837 조, 제 838 조, 제 846 조, 제 937 조 제 1 항 1 호 ㉔).

⑥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규정에 따른 해산명령

(법 제 48 조의 20 제 1 항) (6 호)

세리사법인은 그 설립방식을 준칙주의에 의한다. 그러나 재무부장관은 세리사법인이 설립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에 대한 행정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도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위 ①~ 의 해산사유 이외에 사원이 한 명이 되어 한 명이 된 날로부터 계속 6 개월간 사원이 2 인 이상 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 6 월이 지난때에 해산한다(법 제 48 조의 18 제 2 항).

(2)신고서

세리사법인은 합병과 제명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일로부터 2 주일 이내에 그 뜻을 본점소재지 관할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 세리사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 48 조의 18 제 3 항).

또한 합병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다(법 제 49 조의 19 제 3 항).

그리고 징계처분 시는 신고서제출이 없어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6. 세리사법인의 징계·벌칙

(1)세리사법인의 징계절차개요

세리사법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세리사와 같으나 세리사법인 자체가 징계를 받은 때에는 그 세리사법인의 사원세리사도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

①세리사법인의 「 세리사법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

재무부장관은 세리사법인이 세리사법 또는 세리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혹은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경고 또는 1 년 이내의 업무전반 혹은 일부 정지를 명령

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 48 조의 20 제 1 항).

②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

세리사법인을 징계처분 하는 때에 그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이 세리사법 제 45 조(탈세상담 등을 한 때의 징계), 제 46 조(일반징계)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원인 세리사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병행할 수 있다(법 제 48 조의 20 제 4 항).

사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사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

소속된 사원 등은 본인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한 개인적으로 징계처분되지 아니하나 세리사법인이 해산처분을 받은 때에는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 또는 사용인인 세리사라는 입장이 상실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정지기간 중에는 당해 세리사법인 명의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④사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사원 세리사 등이 징계처분에 회부된 때에도 세리사법인 자체가 징계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한 징계처분의 효력은 세리사법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과료벌금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이 일정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30 만 엔 이하 또는 100 만 엔 이하의 과료 혹은 30 만 엔 이하 또는 100 만 엔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법 제 62 조, 법 제 64 조, 법 제 65 조).

(3)양벌규정

세리사법인의 대표자,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세리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징역 또는 벌금형)외에 그 세리사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 63 조)

7. 세리사법인의 수입

일본세리사연합회가 2004년 4월에 전국의 세리사회원 및 세리사법인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5 회 세리사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세리사법인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1)세리사법인의 수입금액

회답을 보내온 233 개 세리사법인 중에서 「1억 엔 이상」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36.5%), 그 다음이 「5 천만 엔 이상」으로 64 건(27.5%)이었다. 「10억 엔 이상」은 2건, 「7억 엔 이상」이 1건 이었으며 세리사법인

의 평균수입금액은 약 1억 4천 7백만 엔 이었다.

所属ブロック	回答数	16 税理士法人の収入金額																	
		5,000万円未満		5,000万円以上		1億円以上		2億円以上		3億円以上		5億円以上		7億円以上		10億円以上		無記入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合計	233	39	16.7%	64	27.5%	85	36.5%	20	8.5%	12	5.2%	4	1.7%	1	0.4%	2	0.9%	6	2.6%
東京会	45	5	11.1%	16	35.6%	19	42.2%	3	6.7%			1	2.2%					1	2.2%
東京地方会・千葉県会	24	9	37.5%	7	29.2%	5	20.8%	2	8.3%									1	4.2%
関東信越会	26	3	11.5%	4	15.4%	13	50.1%	4	15.4%	1	3.8%			1	3.8%				
近畿会	41	6	14.7%	14	34.1%	12	29.3%	3	7.3%	1	2.4%					2	4.9%	3	7.3%
北海道会、東北会	21	2	9.5%	7	33.3%	7	33.3%	2	9.5%	1	4.8%	2	9.5%						
名古屋会、東海会、北陸会	34	4	11.8%	8	23.5%	13	38.3%	3	8.8%	5	14.7%							1	2.9%
中国会、四国会	18	2	11.1%	6	33.3%	8	44.4%	1	5.6%			1	5.6%						
九州北部会、南九州会、沖縄会	22	8	36.4%	1	4.5%	7	31.8%	2	9.1%	4	18.2%								
所属ブロック不明	2			1	50.0%	1	50.0%												

그리고 개업세리사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회답자 24,229 명 중에서 「5백만 엔 미만」이 6,314 명(2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천만 엔 이상」이 4,083 명(16.9%)이었고, 「5백만 엔 이상」이 3,277 명(13.5%)이었습니다. 개업세리사의 평균수입금액은 약 2,690 만 엔 이었다.

税理士会	回答者数	26 税理士の業務に係る収入金額																							
		1,500万円未満		1,500万円以上		1,1,000万円以上		2,000万円以上		3,000万円以上		4,000万円以上		5,000万円以上		7,000万円以上		1億円以上		2億円以上		3億円以上		無記入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件数	%
合計	24229	6314	26.1%	3277	13.5%	4083	16.9%	2811	11.6%	1868	7.7%	1382	5.7%	1492	6.2%	1093	4.5%	754	3.1%	97	0.4%	22	0.1%	1036	4.3%
東京	4180	800	19.1%	557	14.3%	829	19.8%	573	13.7%	388	9.2%	249	6.0%	253	6.1%	160	3.8%	123	2.9%	14	0.3%	6	0.1%	180	4.5%
東京地方	1714	408	23.7%	214	12.5%	305	17.8%	221	12.9%	140	8.2%	113	6.6%	110	6.4%	80	4.7%	63	3.7%	7	0.4%	1	0.1%	54	3.2%
千葉県	881	318	36.1%	156	15.4%	151	17.1%	80	9.1%	44	5.0%	36	4.1%	27	3.1%	30	3.4%	23	2.6%	1	0.1%	1	0.1%	34	3.8%
関東信越	3065	878	28.6%	368	12.0%	442	14.4%	328	10.7%	227	7.4%	172	5.6%	212	6.9%	167	5.4%	130	4.2%	25	0.8%	3	0.1%	112	3.7%
近畿	5353	1390	26.0%	779	14.6%	956	17.9%	640	12.0%	399	7.5%	280	5.2%	302	5.6%	288	4.4%	119	2.2%	11	0.2%	5	0.1%	234	4.4%
北海道	762	227	29.8%	104	13.6%	112	14.7%	75	9.8%	46	6.0%	43	5.6%	54	7.1%	48	6.3%	20	2.6%	2	0.3%	1	0.1%	30	3.9%
東北	1288	412	32.0%	196	15.2%	190	14.8%	109	8.5%	87	6.8%	65	5.0%	77	6.0%	56	4.3%	50	3.9%	4	0.3%			42	3.3%
名古屋	1105	264	23.9%	134	12.1%	200	18.1%	143	12.9%	98	8.9%	83	7.5%	75	6.8%	40	3.6%	29	2.1%	2	0.2%	1	0.1%	42	3.8%
東海	1485	356	24.0%	148	10.0%	244	16.4%	173	11.6%	136	9.2%	106	7.1%	121	8.1%	76	5.1%	58	3.9%	3	0.2%	1	0.1%	63	4.2%
北陸	487	155	31.8%	48	9.9%	65	13.3%	43	8.8%	39	8.0%	24	4.9%	30	6.2%	22	4.5%	21	4.3%	11	2.3%	1	0.2%	28	5.7%
中国	1407	414	29.4%	183	13.7%	215	15.3%	142	10.1%	95	6.8%	82	5.8%	81	5.8%	65	4.6%	46	3.3%	4	0.3%			70	5.0%
四国	541	151	27.9%	87	16.1%	72	13.3%	81	11.3%	39	7.2%	29	5.4%	30	5.5%	17	3.1%	14	2.6%	2	0.4%	1	0.2%	38	7.0%
九州北部	1111	318	28.6%	155	14.0%	176	15.8%	125	11.3%	79	7.1%	47	4.2%	58	5.2%	54	4.8%	36	3.2%	4	0.4%	1	0.1%	58	5.2%
南九州	681	165	24.2%	101	14.8%	102	15.0%	77	11.3%	46	6.8%	47	6.9%	50	7.3%	34	5.0%	20	2.9%	6	0.9%			33	4.8%
沖縄	169	60	35.5%	17	10.1%	24	14.2%	20	11.8%	7	4.1%	6	3.6%	12	7.1%	6	3.6%	8	4.7%	1	0.6%			8	4.7%

(2) 세리사법인의 수입내역

회답을 보내온 233 개 세리사법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내역은 「세리사업무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78.4%이었다. 그 다음으로 「세리사업무와 부수하여 행하는 회계업무에 따른 수입」으로 18.6%이었다.

万円であった。

所属ブロック	回答数	17. 税理士法人の収入内訳					
		回答件数	税理士業務による収入	税理士業務に付随して行う会計業務による収入	税理士業務に付随しないで行う会計業務による収入	補佐人業務による収入	その他による収入
合計	233	202	78.4%	18.6%	1.7%		1.1%
東京会	45	37	77.5%	19.1%	1.2%		0.9%
東京地方会・千葉県会	24	21	84.0%	14.0%	1.9%		0.1%
関東信越会	26	24	76.9%	22.1%	0.9%		0.7%
近畿会	41	36	82.1%	16.1%	0.8%	0.1%	1.0%
北海道会、東北会	21	20	71.7%	22.6%	3.8%		2.0%
名古屋会、東海会、北陸会	34	29	77.9%	19.5%	1.8%		1.5%
中国会、四国会	18	15	65.1%	28.2%	5.9%	0.3%	1.0%
九州北部会、南九州会、沖縄会	22	19	87.1%	11.0%			1.9%
所属ブロック不明	2	1	100.0%				

(참고문헌)

「세리사법인 안내」 긴끼세리사회

「Web 세리사법」 긴끼세리사회

「세리사법인의 설립·운영」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 5 회 세리사 실태조사보고서」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세무사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 10624 호, 2011. 5. 2, 일부개정]

제 4 장의 2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3(설립)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 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09.1.30]

제 16 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① 세무법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 16 조의 5 에 따라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2. 제 16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자본금이 2 억원 이상일 것
3.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법 또는 이 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4. 등록신청 서류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없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자가 제 2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 1 항에 따른 세무법인 등록의 절차와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2(세무법인의 등록) ① 법 제 16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11.15>

1. 정관

2. 대표이사의 이력서
3. 이사 및 소속세무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가 기재된 서류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 16 조의 4 제 3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5(사원 및 이사 등) ① 세무법인의 사원은 세무사이어야 하며, 그 수는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3 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 17 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 16 조의 15 제 1 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세무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 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 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 ④ 제 3 항에 따른 세무사 중 이사가 아닌 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는 제 17 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 ⑤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⑥ 세무법인의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1. 제 7 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3(세무법인의 대표이사) 법 제 16 조의 5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에는 3 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6(자본금 등)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 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 1 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 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③ 제 2 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 2 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6 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세무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4(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① 세무법인은 법 제 16 조의 7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 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당해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제 1 호의 금액에서 제 2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4.6>

- 1. 당해 세무법인에 소속된 세무사의 수에 3 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당해 세무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② 세무법인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 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으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를 포함한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세무법인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4.6> [본조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세무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5(타법인출자의 제한 등) 법 제 16 조의 8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 16 조의 8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 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

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2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9(명칭) ① 세무법인은 그 명칭에 세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이 아닌 자는 세무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6 조의 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6(분사무소) 법 제 16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1 인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30]

제 16 조의 11(업무 수행의 방법) ① 세무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세무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세무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세무사와 함께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 각자 그 세무법인을 대표한다.

③ 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6 조의 12(경업의 금지) ①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는 자기나 제 3 자를 위하여 그 세무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세무사이었던 자는 그 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세무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세무법인이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6 조의 13(해산) ① 세무법인은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 1 항 각 호(제 4 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세무법인은 제 1 항 각 호(제 3 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 16 조의 7 제 1 항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18 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제 3 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령) 제 14 조의 7(예치금의 관리·운영) ① 세무법인이 법 제 16 조의 1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 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잔액을 예치일부터 3 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 1 항 내지 제 6 항외에 예치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02.12.30]

시행규칙) 제 13 조의 4(세무법인 해산사유의 통보) 법 제 16 조의 1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법인이 해산사유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14 호 5 서식의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 부
2. 법 제 16 조의 13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을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부(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본조신설 2003.3.5]

제 16 조의 14(정관 변경의 신고) 세무법인은 제 16 조의 3 제 2 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 자본금 총액(자본금이 감소한 경우만을 말한다)
6.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시행규칙) 제 13 조의 5(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법 제 16 조의 14 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4 호의 6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1. 신·구정관 각 1 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 부[본조신설 2003.3.5]

제 16 조의 15(등록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 16 조의 4 제 1 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 16 조의 5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또는 제 16 조의 6 제 1 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세무법인이 6 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 16 조의 6 제 4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보전명령 또는 증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 16 조의 5 제 4 항·제 5 항, 제 16 조의 7, 제 16 조의 8, 제 16 조의 9 제 1 항, 제 16 조의 11 또는 제 16 조의 14 를 위반하거나 제 16 조의 16 제 1 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 11 조, 제 12 조, 제 12 조의 2 부터 제 12 조의 4 까지, 제 14 조 및

제 5 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16 조의 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 10 조부터 제 12 조까지, 제 12 조의 2 부터 제 12 조의 4 까지, 제 14 조, 제 15 조 및 제 17 조제 4 항(세무법인이 제 16 조의 15 제 1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 17 조제 4 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 10805 호, 2011. 6.30>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세무사법」

[시행 2011. 8. 3] [법률 제 10624 호, 2011. 5. 2, 일부개정]

제 10 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 9 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신청서·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1 조(비밀 엄수)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2 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2 조의 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2 조의 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2 조의 4(사무직원) 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 1 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인원·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 14 조(장부 작성) 세무사는 업무와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30]

제 15 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1.30]

제 5 장 징계 <개정 2009.1.30>

제 17 조(징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 2 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 7 조제 3 호 및 제 4 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 6 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가 제 2 항제 3 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⑥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30]